

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305,774,217 | 39,173,227 |
| 일반회계 | 1,136,300,775 | 34,089,023 |
| 특별회계 | 169,473,442 | 5,084,203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47,911,642 | 4,437,349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4,940,514 | 1,048,215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46,465,333 | 1,393,960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66,505,795 | 1,995,174 |
| 기타특별회계 | 21,561,800 | 646,854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833,200 | 24,996 |
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| 7,481,839 | 224,455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4,234,509 | 127,035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6,054,033 | 181,621 |
|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| 2,367,319 | 71,02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590,900 | 17,727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545,38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5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